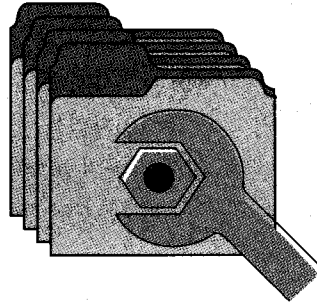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및 법규해석



건설산업기본법 해석

가스시설시공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에 해당된다. 시공업의 종류는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에서 제3종가스시설 시공업까지 있으며, 시공업을 하기위한 등록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요소

- 1) 자격
- 2) 기술능력
- 3) 사무실 보유
- 4) 시설·장비

2) 등록 절차 및 업무내용

신청 요건 구비 - 등록신청서 작성 - 등록관청(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 또는 건설과에 신청 - 담당부서 신청서류 검토 - 등록요건 적합 - 시 공업 등록필증 교부

(1)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하여야 함.

① 등록절차

신청자의 자격, 기술능력, 시설·장비보유 입증서류와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관청(시·군·구청)의 담당부서(지역경제과 또는 건설과)에 제출

② 등록기준

다음과 같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함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용접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가스·특수

용접기능사 또는 공업·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원 이상 (보증기능금
액 1억원 이상)

(2)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
업 등록을 하여야 함.

〈사무실〉

· 전용면적 20㎡ 이상

① 등록절차

신청자의 자격, 기술능력, 시설·장비보유 입
증서류와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관
청(시·군·구청)의 담당부서(지역경제과 또는
건설과)에 제출

〈시설·장비〉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 볼트 및 압페어메타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MΩ) 그 밖의 측정
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
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 각종 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② 등록기준

다음과 같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함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
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
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
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
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
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③ 시공범위

제1종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가 시공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
치·변경공사

〈자본금〉

· 해당없음



〈사무실〉

- 전용면적 12㎡ 이상

〈시설·장비〉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③ 시공범위

제2종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가 시공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시설중 특정가스사용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3)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하여야 함.

① 등록절차

신청자의 자격, 기술능력, 시설·장비보유 입증서류와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관청(시·군·구청)의 담당부서(지역경제과 또는 건설과)에 제출

② 등록기준

다음과 같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함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가) 다음 각항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②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 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③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자본금〉

- 해당없음

〈사무실〉

- 전용면적 12㎡ 이상

〈시설·장비〉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 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③ 시공범위

제3종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가 시공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다음에 해당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가스법규 용어해설

1) 도시가스공급시설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도시가스 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포함) 및 이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공급 설비 및 그 부속설비

2) 도시가스시설중 특정가스사용시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월사용예정량이 2,000m³(제1종보호시설안에는 경우에는 1,000m³)이상인 시설

3) 도시가스 공급관

(1)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

(2) 공동주택등의외의 건축물등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

(3)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에 이르는 배관

4) 도시가스 사용자공급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

5) 도시가스 내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에 이르는 배관



6)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기 위한 시설

7)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

저장설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부까지의 배관 기타 공급 시설

8)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5톤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시설

9)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보관실에 보관하여 판매하는 시설

10) 액 화 석 유 가스 사용 시설

5톤미만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시설

3.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후 가스시설을 시공할 경우 시공현장마다 건설기술자(시공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에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③ 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1. 공사에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

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 제>

⑤ 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예정금액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5)

<300억 원 이상>

· 기술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200억 원 이상>

· 기술사 /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50억 원 이상>

· 기술사 /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 나.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당해 공

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0억 원 이상>

·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나.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0억 원 미만>

·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나. 당해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 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